

하나은행 OPEN API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Open API"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를 말한다.
2. "서비스"란 "은행"내부의 금융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Open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Open 플랫폼"이란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운영하는 API 중계 시스템(API 게이트웨이, API 서버, Open 플랫폼 포탈 등)을 말한다.
4. "Open 플랫폼 포탈"(이하 "포탈"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가입 및 "서비스"의 이용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이용신청기관"이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포탈"을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한 기관(법인,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등)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은행"의 승낙을 받은 후, "은행"이 제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테스트 및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최종사용자"란 "은행"이 제공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기관"이 개발한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서비스의 내용)

"Open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금융 서비스 API 제공 (수신, 여신, 외환, 투자, 이체, 결제 등)
- ② 금융 데이터 API 제공 (수신, 여신, 외환, 투자 등)
- ③ 기타 "은행"이 제공하는 API형태의 서비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용신청기관"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은행"이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이용승인이 해지될 때 "서비스" 이용계약은 해지된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기관"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이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서비스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서비스 이용신청)

- ① "이용신청기관"이 "포탈"에서 "은행"이 정한 가입양식에 "이용신청기관"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진다.
- ②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기관"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포탈"을 통해 신청하며, 이용희망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하나은행 통장 표제부 사본(수수료 납부계좌)
 - 3.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이용기관 사업현황, 사업모델 등)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 승인 및 거절)

- ① "은행"은 이 약관 제5조 제2항의 "이용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서비스" 이용목적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용신청기관"의 이용신청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심사에 있어 "이용신청기관"과 "은행"간에 사용될 전산망 구성의 보안성, "이용신청기관"의 보안 취약점, "이용신청기관"의 "최종사용자" 정보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 결과를 "이용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 ④ "은행"은 "이용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2.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이전에 "이용기관"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탈퇴,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 4. "이용신청기관"의 업태가 사행행위 관련이거나 금융질서문란 위험이 있는 경우
 - 5. "이용신청기관"의 사업모델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 6. 중요재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이용신청기관”의 재무안정성이 위험한 경우

7. “이용신청기관”의 전산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보안취약점이 있거나, “이용신청기관”의 “최종사용자” 정보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8. 기타 “은행”의 평판이나 “최종사용자”의 권리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 “은행”이 서비스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이용기업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은행”은 “이용신청기관”에게 이용승인 불가사유를 통지한다. 다만,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7 조 (서비스 이용개시)

- ① “은행”이 “이용신청기관”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기관”이 요청한 이용희망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 이용희망일은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기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은행”은 다음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한다.
 1. 정기점검, 서비스 이용 향상 등을 위해 은행이 정한 날이나 시간
 2.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정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 ③ “은행”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기업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이용기업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 9 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 ① “은행”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일자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모든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종료 등과 같은 "은행"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 혹은 제한할 경우 "은행"은 그에 대해서 사전에 "이용기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한다. 또한 포털에 등록된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이용기관 담당자의 장기부재로 인해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은행"은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
2. "이용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3.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접속을 시도하거나 반복적인 접속을 시도하여 과부하 발생 등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4. "Open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이용기관"에 이 약관 제6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비스 신청 당시 이용기관에 본 약관 제6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이용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은행"은 해당 "이용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동 "이용기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항의 절차에 의거 "이용기관"에게 최고하고 정당한 소명이 없는 경우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에 이 약관 제6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비스 신청 당시 "이용기관"에 이 약관 제6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2.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4. 이 약관 제12조(양도금지), 제16조(이용기관의 의무), 제17조(고지의무), 제18조(최종사용자

보호),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방법 등), 제21조(면책사항)를 위반한 경우

5. 최근 1년간 "Open 플랫폼"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6. "이용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7. 이용기관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이용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은행"은 해당 "이용기관"의 "Open 플랫폼" 이용을 중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기관"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해당 기간 내에 소명내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기관"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해지일은 "은행"이 "Open 플랫폼" 원장에 해지등록한 날로 한다.

제 12 조 (양도 금지)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기관"에게 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

제 13 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기관"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Open 플랫폼"에 게재하거나 "이용기관"이 등록한 전자우편(E-mail)등을 통하여 통지한다.

④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이용하는 "이용기관"이 상호협조에 의하여 해결하며, 그러한 손해가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⑤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한다.

제 14 조 (이용기관의 의무)

-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이용기관"은 자신의 ID/Password, 보안코드와 이용기관식별코드가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 "이용기관"은 "Open 플랫폼"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이용기관"은 "최종사용자"나 "은행"이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이용기관"은 제16조에 의거 "최종사용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이용기관"은 이용기관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은행"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다.
- ⑦ "이용기관"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이 "이용기관"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이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한다.
- ⑨ "이용기관"은 "Open 플랫폼"과 관련한 "서비스"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수료

제 15 조 (수수료)

- ① "은행"은 "Open 플랫폼"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기관"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이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은행"이 "이용기관"이 등록한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한다.
- ③ "이용기관"이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불가한 경우, 이용불가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본 "서비스" 해지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관"의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시에 별도 청구한다.

④ "이용기관"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은 변경일 1개월 전까지 "이용기관"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며 "이용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일 15일 전까지 이의사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변경된 수수료를 변경일부터 적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6 조 (고지 의무)

① "이용기관"은 중요사항에 대해 "최종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최종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최종사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 앞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Open 플랫폼"과 관련하여 알게 된 "최종사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최종사용자" 및 "은행"에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7조 (최종사용자 보호)

① "최종사용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은행"은 15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종사용자" 보호조치에는 "은행"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해당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부정접속 방지)

① "은행"은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포탈" 접속용 패스워드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우 업무 이용을 중지시킨다.

② "이용기관"이 중지 해제를 원할 경우 "은행" 앞 변경요청을 해야 한다.

제 19 조 (전산처리 절차)

전산처리명세의 송.수신 절차, 방법, 시간, 이체일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0 조 (보안관리)

① "이용기관"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점검요청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암호화 운영현황
2. 해킹 등에 대비한 정책사항
3.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체계 등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에서 관련 자료 또는 감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으며,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 공격 등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 21 조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방법 등)

① "은행"은 "Open 플랫폼"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시 해당 거래기록을 파기한다.

1. 이용 업무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Open 플랫폼"관련 "서비스"의 거래 일시, "이용기관"이 사용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Open 플랫폼"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4. "최종사용자"의 주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②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2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이용기관"이 제14조 제2항의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고의·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한다.

③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에 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해당 "이용기관"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은행"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용기관"은 "은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최종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용기관"이 보안코드, 이용기관식별코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23 조 (이의 제기)

① "이용기관"은 "Open 플랫폼" "서비스"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해결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약관-112호(2024.09.30)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용기관"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기관"은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4 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 ① "은행"과 "이용기관"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세부사항의 결정)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기존 "은행"과 Open API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에게도 해당 약관이 적용된다.

본 약관은 2024. 11. 29부터 시행한다.